

소년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1. 의결주문

소년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-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이 2016. 5. 29. 법률 제14237호로 개정되어 2016. 11. 30.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회복지원시설(「소년법」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·주거·학업·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)이 청소년복지시설로 규정되었으므로, 그에 맞추어 위탁보호위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위탁보호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에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31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종사자 중 시설장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추가함(안 제33조제1항)
- 법원장은 해촉하는 위탁보호위원이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31조제4호에 정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종사자 중 시설장인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(안 제33조 제3항)

4. 소년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붙임과 같음

5. 신·구조문 대비표

붙임과 같음

소년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소년심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 제1항 중 “정신과 의사, 심리학자, 사회사업가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”을 “정신과 의사, 심리학자, 사회사업가,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31조제4호에 정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종사자 중 시설장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법원장은 제2항에 따라 해촉하는 위탁보호위원이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31조제4호에 정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종사자 중 시설장인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1.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3조(위탁보호위원의 위촉 등)	제33조(위탁보호위원의 위촉 등)
① 법원장은 법 제18조제1항제1호,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의 감호를 위탁받을 사람(이하 “위탁보호위원”이라 한다)을 <u>정신과 의사, 심리학자, 사회사업가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</u> 중에서 위촉한다.	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정신과 의사, 심리학자, 사회사업가,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31조제4호에 정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종사자 중 시설장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</u> -----.
② (생 략) <신 설>	② (현행과 같음) ③ 법원장은 제2항에 따라 해촉하는 <u>위탁보호위원이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31조제4호에 정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종사자 중 시설장인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</u>

<의안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	
연락처	(02) 3480-1609